

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## 일부개정법률안

### (정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0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9.

발의자 : 정동영 · 김우영 · 이정현

노종면 · 윤준병 · 황정아

박홍배 · 황명선 · 윤종균

민형배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 ·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.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.

또한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8

조).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공공성 및 공정성을”을 “공공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심의위원장의 보수는 위원장의 보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의위원장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심의위원장의 보수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